제928회 신설·강화규제 예비심사 결과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1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 (공정거래위원회)	1.간이심사대상 기업결합(강화) ○ 온라인 플랫폼의 보완성·대체성 없는 혼합결합 중 ▲피인수사업자 또는 사업부문의 월 평균 국내 고객 수가 500만명 이상이거나, ▲피인수사업자가 국내에서 지출하는 연간 연구개발비가 300억원 이상인 경우는 간이심사 대상에서 제외 ▶기업결합 심사기준 제Ⅲ 2.일정한 거래분야 및 경쟁제한성 판단기준(강화)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관련된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일정한 거래분야’ 및 ‘경쟁제한성’을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추가 – (일정한 거래분야 시작획정 판단기준) 다면시장, 명목상 무료서비스, 혁신시장 획정 판단기준 추가 –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시장점유율 산정, 시장집중도 산정, 수평결합, 수직결합, 혼합결합 판단기준 추가 ▶기업결합 심사기준 제Ⅵ,제Ⅴ	1.중요 2.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2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금융위원회)	1.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에 대한 보호의무(신설) ㅇ 이용자의 예치금 보호 등 – ① 예치금을 예탁할 수 있는 관리기관으로 「은행법」상 은행 및 농협은행 · 수협은행 · 중소기업은행을 지정하고, 예치금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100이상을 예치토록 함 * ‘이용자 예치금’에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지급한 금액(예, 이용료)을 합하고, 이용자의 비용(예, 거래 수수료 등)을 제외한 합계액을 의미 – ②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예치금을 자기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안전한 자산(예, 국채 · 지방채 등)으로 운용토록 함 – ③ 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한 예치금의 양도가 가능한 경우를 사업자의 합병, 영업양도 등으로 제한 *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한 예치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금지됨 – ④ 사업자 파산선고 등 예치금의 이용자 우선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리기관이 이용자 및 사업자로부터 예치금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 후 이용자에게 직접 지급 ㅇ 가상자산의 보관 등 – ①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콜드월렛으로 보관하여야 하는 비율을 이용자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의	1.중요 2.비중요 3.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70%이상으로 설정 – ② 사업자가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위탁하여 보관할 수 있는 기관의 보안기준을 구체화 ○ 보험의 가입 등 – ① 사업자가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보험·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하는 해킹, 전산장애 등 사고의 범위 구체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6조제7조 2.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신설) ○ (거래기록 생성·보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거래기록을 거래 종료시부터 15년간 보존하여야 함 – ① 거래자·거래대상 가상자산, 거래종류·수량·금액 및 상대방, 일시·전자적 장치, 가상자산주소, 수수료, 접속기록 등 보존 – ② 서면·전산정보처리 조직 등을 이용하여 보존하고, 본점 또는 문서보관소에 보관하며, 파기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6조 준용 – ③ 거래 종료는 관계법령, 약관 또는 합의 등에 따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라 계약기간의 만료, 해지·해제·취소권 행사, 변제 등으로 종료된 날이 기준 ㅇ (이해관계자의 범위) 제재 및 조치명령권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재 및 조치명령권 대상인 이해관계자의 범위를 규정 – 가상자산 발행인·네트워크 운영자, 「특금법」상 실명계정을 운영하는 금융회사(은행),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는자 등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3조,제15조 3.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신설) ㅇ (정보의 공개) 가상자산의 거래에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형벌·과징금 부과의 대상이 되며, 정보 공개 기준을 시행령에 규정 – 「자본시장법」상 입법례, 가상자산시장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보공개의 기준을 마련 ㅇ (자기발행 가상자산 거래금지 예외) 가상자산사업자가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착오 입금 등을 통해 자기 또는 특수관계인 발행 가상자산을 취득한 경우를 예외로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인정하되, 즉시 반환하거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 – 또한 자기 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을 취득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시(시장에 안내)하고, 금감원에 분기별로 보고 ㅇ (이상거래 감시의무) 「자본시장법」상 이상거래의 정의를 준용하여 가상자산거래소의 상시감시 대상인 이상거래의 범위를 규정 – ①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에 뚜렷한 변동이 있는 경우 – ② 가상자산의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풍문 또는 보도 등이 있는 경우 – ③ 그 밖에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0조,제12조,제14조의2	
3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국토교통부)	1.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 건축물(신설) ㅇ 지하층 거실 설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건축물의 범위를 ①단독주택, ②공동주택, ③다중생활시설, ④노유자시설로 규정 ▶건축법 시행령 제63조의6	1.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4	소방호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소방청)	1.소방호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강화) ㅇ 소방호스의 성능 안정성 향상을 위한 시험기준 규정 – 연결금속 재질 신규 규정 및 고무패킹 물침수 시험 도입 – 낙하시험 기준 강화 – 시험세칙의 염수분무 시험 기술기준 반영(기존시험) – 고무 및 합성수지의 품질 노화시험 도입 – 신장률 시험 적용 시험압력 강화 – 비뚤어짐시험 적용 시험압력 강화 – 상승시험 신규 도입 – 압력손실시험 신규 도입 – 내열시험 신규 도입 – 접음저항시험 신규 도입 – 침수시험 신규 도입 – 저온시험 신규 도입 – 압력손실시험(릴호스) 신규 도입 ▶소방호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7조, 제8조,제9조의2,제13조,제19조,제21조,제22조의2,제22조의3,제22조의4,제22조의5,제22조의6,제22조의7,제37조의2	1.비중요